

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

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
2012년 6월 4일

김 천 시



1. 사업의 명칭 :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

2. 사업시행자

가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(주)한국토지신탁 대표 김용기
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(역삼동 702-2)

3.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용

가. 위 치 : 김천시 용명동 산36번지 외 5필지

나. 연 면 적 : 53,732.2018㎡

다. 사업규모 : 6개동 19층 417세대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사업주체	(주)동일티앤티 대표이사 정종희 서울 강남구 청담동 40-3	(주)한국토지신탁 대표이사 김용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
시공자	에쓰지종합건설(주) 대표이사 이영태 (토목건축공사업 13-0150)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2-5	(주)이테크건설 대표이사 이복영, 오창석 (토목건축공사업-798)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
대지면적	20,477㎡	20,204㎡
건축면적	4,587.0865㎡	11,188.2708㎡
연 면 적	59,947.9950㎡	53,732.2018㎡
층 수	18층	19층
세 대 수	348세대	417세대
사 업 비	67,407,864천원	76,185,700천원

4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

- 「건축법」 제11조 【건축허가】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【개발행위의 허가】
- 「도로법」 제38조 【도로점용 허가】
-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 【산지전용 허가】